

【 4 】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9. 5. 1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제명을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개칭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년간 일정금액을 정하며, 기존 “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용어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제명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함
- 나. 제2조중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삭제함(안 제2조)
- 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조성재원중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양주군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개정하고, 향후 부동산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이 가능하도록 “기타수익금”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1호, 제4호)

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여유자금을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마. 경영수익사업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명칭을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바. 회계관리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과 투자사업비가 병행관리되도록 “사업비” 관리조항을 삽입함(안 제9조, 제10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양주군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1. 양주군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4. 기타수익금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군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양주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타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항중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을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경영진단기획단”을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제3호중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을 “심의위원회”로 하며 “협의”를 “심의”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를 “투자기금 및 사업비를 효율적으로”로,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특별회계운용관”으로, 동항제1호중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특별회계운용관”으로, 동항 제3호중 “장기발전추진업무담당주사”를 “투자유치담당주사”로 하며 제2항중 “기금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를 “특별회계운용관은 투자기금 및 사업비를 적정히”로, “투자기금”을 “투자기금 및 사업비”로 한다.

제10조중 “투자기금을 위한”을 “투자기금 및 사업비를 위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특별회계운용관”으로,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을 “심의위원회”로 하며 제2항중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를 “특별회계예산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규정은 2000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을 유보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명 <u>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u>
제2조(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양주군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서 양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하 “투자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 투자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여 그 투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3.(생략) (신설)	제3조(투자기금의 조성) ①----- ----- ----- ②----- ----- 1. 양주군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3.(현행과 같음) 4. 기타수익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생략) 1.~4.(생략) (신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제5조(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설치) 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이하 “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군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양주군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대상사업) 투자가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생략) (신설)	③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별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 ----- 1.~5.(현행과 같음) 6. 기타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대상사업 선정) ①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생략)	제7조(대상사업 선정) ①----- ----- ----- ②(현행과 같음)
제8조(투자기금의 운용 계획) ①투자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생략) 1.~2.(생략) 3.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생략)	제8조(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 ----- ----- 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심의위원회 ----- 심의 ----- 4.(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특별 회계운용관을 둔다. 1. 기금특별회계운용관 : 부군수 2. (생략) 3. 분임지출원 : 장기발전초진업무담당조사	제9조(회계공무원) ①투자기금 및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 특별 회계운용관 ----- 1. 특별회계운용관 : ----- 2. (현행과 같음) 3. ----- : 투자유치담당조사

현 행	개 정 안
<p>② <u>기금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u></p>	<p>② <u>특별회계운용관은 투자기금 및 사업비를 적정히 투자 기금 및 사업비</u></p>
<p>제10조(회계관리) <u>투자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양주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u></p>	<p>제10조(회계관리) <u>투자기금 및 사업비를 위한</u></p>
<p>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u>기금특별회계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경영수의사업 발굴 및 진단 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② <u>군수는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양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u>특별회계운용관</u> --- --- --- <u>심의위원회</u> --- --- ② <u>특별회계예산서</u> --- ---</p>

제2면 기획감사 제2장 장기발전·예산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1991. 3. 13]
[조례 제1367호]

개정 1992. 9. 9 조례 제1433호

개정 1992.11.16 조례 제1439호

개정 1997. 7. 7 조례 제1616호

개정 1998.10.14 조례 제1684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할은 양주군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전단기획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서 내 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

제 3 조(투자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서 양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하 "투자기금"이라 한다)이라 할은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 투자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여 그 투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상용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 투자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금융기관(단자회사 포함)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및 배당금

제 4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운용 관리하되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②항 및 지방재정법 제 5조 ②항에 의한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제3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투자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유가증권 매입

제2편 기획감사 제2장 장기발전·예산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2. 금융기관에 예치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4. 개발부담금

제 5 조(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설치) ①투자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군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이하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3. 투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 6 조(대상사업)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래, 자갈, 석재, 천근수, 약수, 온천 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 주차장 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위락지 시설 확충운영, 일수산 소득증대 가능사업
4. 지역토산품 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영가능 사업
5. 지방 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제 7 조(대상사업 선정) ①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실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양주군의 의무적 추진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접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 8 조(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투자기금운용계획은 대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경영진단 기획단의 실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투자기금 사용계획
3.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9 조(회계공무원) ①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특별회계운용관을 둔다.

제2편 기획감사 제2장 장기 발전·예산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2. 금융기관에 예치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4. 개발부담금

제5조(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설치) ①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의하기 위하여 양주군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이하 "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3. 투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대상사업)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 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 주차장 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위락지 시설 확충운영, 일수산 소득증대 가능사업
4. 지역토산품 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영가능 사업
5. 지방 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제7조(대상사업 선정) ①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실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양주군의 의무적 추진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접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경영진단 기획단의 실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투자기금 사용계획
3.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 ①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특별회계운용관을 둔다.

제2회 기획감사 제2장 장기발전·예산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1. 기금특별회계운용관:부군수
 2. 분임운용관:기획감사실장
 3. 분임운용관:기획감사실장

② 기금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종별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투자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 회계법 및 양주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경영수석에게 제출하고, 전국기금회계연도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양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367 호)

— १० —

부 칙 (1992. 9. 9 조례 제1433호)

— ० —

부 칙 (1992. 11. 16 조례 제1439호)

○ 시체를 향해 서둘러 걸어온다.

법률 제1616호) (1997. 7. 7. 조례)

○ 甘谷縣志 第二編 藝文志 第三章

11. 1998. 10. 14. [제 1684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2)

양 주 군

글로는 글문서로서의 흐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장

함

기관의장

군 보

제 134 호

1999년 4월 19일 (월)

차례

고시

양주군 고시	제1999-25호 유수인용(주수)허가 사항 고시	2
양주군 고시	제1999-26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2
양주군 고시	제1999-28호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고시	3

공고

양주군 공고	제1999-133호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별적고	4
--------	---	---

회
람

전태봉

7/1

한민수

이성근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34 호

공 고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1999-133호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략 알
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14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2. 개정이유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제명을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개칭하고, 일반회계에서 등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년간 일정증액을 50%로 하향조정하되, 역수차금을 부동산대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기존 ‘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을 ‘경영수
익사업실의위원회’로 대체하여 민간위탁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용어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
회계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함.

나.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를 “내부부처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삭제함.(안
제2조)

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조성재원중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이자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금’을 ‘양주군 일반회계이자 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
금’으로 개정하고, 향후 부동산대각수입과 임대수입이 가능하도록 “기타수익금”조항을 신설
함(안 제3조 제2항 제1호, 제4호)

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역수차금을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대입’이 가능하도록 조항
을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5호)

마. 경영수익사업실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실
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등 위원회에 민간의원의회과 찰선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바. 회계관리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과 투자사업비가 병행관리되도록 ‘사업비’ 관리조
항을 삽입함.(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16점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전화 820-2056, 2057)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제명을 “양주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개칭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년간 일정금액을 정하며, 기존 “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용어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할.

□ 주요골자

- 가. 제명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함
- 나. 제2조중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삭제함(안 제2조)
- 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조성재원중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양주군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개정하고, 향후 부동산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이 가능하도록 “기타수익금”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1호, 제4호)
- 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여유자금을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5호)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제명을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개칭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년간 일정금액을 정하며, 기존 “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용어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제명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함
- 나. 제2조중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삭제함(안 제2조)
- 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조성재원중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양주군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개정하고, 향후 부동산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이 가능하도록 “기타수익금”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1호, 제4호)

- 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여유자금을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5호)
- 마. 경영수익사업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명칭을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 바. 회계관리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과 투자사업비가 병행관리되도록 “사업비” 관리조항을 삽입함(안 제9조, 제10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입금임.

사전예고결과

○ 1999. 4. 14 ~ 1999. 5. 3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음

기타참고사항 : 별첨

○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1부